



## 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·한국발명진흥회



###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서

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과 한국발명진흥회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.)는 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, 기업 발굴 및 정보교환을 위한 업무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상호 협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양 기관의 공동 이익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식재산의 평가·거래·사업화 지원 및 정보교환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상호 간 노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업무협력 분야)** 양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.

1. 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대한 상호 협력
2. 산학협력을 위한 파트너 기업 발굴 및 관련 정보 공유
3. 지식재산권 담당자 교육 업무 협조
4.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업무에 대한 협력

**제3조(세부사항)** 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업무 협력 분야의 성과 달성을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4조(대가의 지급 등)** 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은 한국발명진흥회가 발굴한 수요자와 계약체결에 성공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기술료 수입의 10%(부가세 및 제반 소요비용 제외)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지급하기로 한다. 단, 기술료는 정액 및 선급기술료만 해당된다.

**제5조(실무위원회)** 양 기관은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

**제6조(양도금지)** 양 기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협약 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

게 양도할 수 없다.

**제7조(협약의 이행)** 양 기관은 상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협약에 의한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상호간 업무상 자문에 성실히 응한다.

**제8조(비밀유지)** 양 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,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해서는 안 된다.

**제9조(협의조정)**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**제10조(협약기간 및 내용수정)**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 하며,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. 단, 협약 내용을 수정 할 경우 협약 만료 6개월 전에 상호 협의 하에 수정해야 한다.

**제11조(협약의 해지)** 양 기관은 대·내외적으로 본 협약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상호 협의 하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**제12조(기타)**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쌍방 합의에 따른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날인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. 4.

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

단장 이 덕 영



한국발명진흥회

회장 구자열

